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금융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개정('20.2.4일 공포, '20.8.5일 시행)에 따라, 관련 법령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용어 변경(안 제10조의3)

현행 개인의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가능 요건 중 하나인 신용평가등급 상승을 개인신용평점 상승으로 변경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3. 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음

대통령령 제 호

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3제1항제1호 중 “신용평가등급”을 “개인신용평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”을 “개선,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3(금리인하 요구) ①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.	제10조의3(금리인하 요구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: 취업, 승진, 재산 증가 또는 <u>신용평가등급</u>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	1. ----- ----- ----- <u>개인신용평점</u> ----- ----- -----
2. 개인이 아닌 자(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)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: 재무상태 <u>개선</u> 또는 <u>신용평가등급</u>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	2. ----- ----- ----- -- <u>개선, 신용등급 또는 개인 신용평점</u> ----- -----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625